

로봇특성화장학금 지급 지침(안)

제1조. (목적) 본 지침은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추진하는 『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』 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. (명칭) 본 장학금은 “로봇특성화장학금”이라 칭한다.

제3조. (선발) 로봇공학과 신입생 전원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**국가장학금을 필수로 신청**하여야 한다.

제4조. (조건)

1. 한국장학재단 **국가장학금 필수 신청**
2. 1학년 2학기 휴학신청시 **등록휴학** 할 것
3. 미등록 휴학 및 자퇴 시 장학금은 전액 환수 될 수 있으며 추후 국가장학금 신청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

제5조. (지급)

1. 지급대상 : 로봇공학과 신입생 전원
2. 지급방법 : 등록금 면제
3. 지급금액 : 1학년 1학기, 1학년 2학기 등록금 전액
(2023년 기준 1학기 4,217,400원 / 2학기 4,075,000원)

제6조. (기한) 본 장학금은 입학시, 1학년 2학기 등록시에 한해 지원된다.

제7조. (대상 및 기준) 본 장학금은 로봇공학과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.

로봇특성화학과혁신지원사업단장

